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. 1. 10 선고 2018가합369 판결 [매매대금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14,064,800원 및 그 중 107,032,400원에 대하여는 2000. 12. 11.부터, 107,032,400원에 대하여는 2001. 12. 11.부터 각 2008. 7. 18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재판장판사장성진

판사강산아

판사기희광

별지